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4. . . (제 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 ○ (안전행정부 장관)
제출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 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대한 세부기준 고시 근거 마련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의 제공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를 위한 세부기준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 나.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액 산정기준, 부과 및 통지 절차, 가산금 등 과징금 부과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의2)
- 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의 제공 지원, 개인정보 분쟁조정 및 침해신고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 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14. 3. 19. 예정

3) 규제심사

붙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② 안전행정부 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

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라 함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안전행정부 장관(법 제68조에 따라 안전행정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의 제공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45조·제47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14. 8. 7일부터 시행한다.

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라 함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 설>

제6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안전행정부 장관(법 제68조에 따라 안전행정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의 제공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45조·제47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라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1호	1000	2000	4000

나. 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호	600	1200	2400
다.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호	600	1200	2400
라.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3호	600	1200	2400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600	1200	2400
바.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1호	200	400	800
사.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2호	200	400	800
아.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2호	1000	2000	4000
<u>자.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u>	<u>법 제75조 제2항제4의 2호</u>	<u>600</u>	<u>1200</u>	<u>2400</u>
<u>차. 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u>	법 제75조 제2항제5호	600	1200	2400
<u>카. 법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u>	법 제75조 제2항제6호	600	1200	2400
<u>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경우</u>	법 제75조 제2항제7호	600	1200	2400
<u>파.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경우</u>	법 제75조 제1항제3호	1000	2000	4000
<u>하.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u>	법 제75조 제3항제3호	200	400	800
<u>거.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u>	법 제75조 제3항제4호	200	400	800
<u>너.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u>	법 제75조 제3항제5호	200	400	800

<u>더.</u>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6호	200	400	800
<u>러.</u>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7호	200	400	800
<u>머.</u>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8호	500		
<u>버.</u>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8호	600	1200	2400
<u>서.</u>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9호	600	1200	2400
<u>어.</u>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0호	600	1200	2400
<u>저.</u> 법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9호	200	400	800
<u>차.</u>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1호	600	1200	2400
<u>카.</u>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	600	1200	2400
<u>타.</u>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10호	100 200	200 400	400 800
<u>파.</u>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11호	200	400	800
<u>하.</u>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3호	600	1200	2400

[별표 3] (신설 2014. 00. 00.)

과징금의 산정기준(제40조의2제1항 관련)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법 제34조의2 규정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34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과징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가. 기본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	비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5천만원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된 경우를 말한다.
중대한 위반행위	2억 3천만원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등이 된 경우 및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일반 위반행위	1억원	○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나. 1차 조정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조치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다. 2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따른 추가적 피해 발생 여부,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라. 부과과징금

1) 개인정보처리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2) 개인정보처리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